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제안설명

- 존경하는 이성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유한국당 중구 2선거구의 이혜경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대상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호텔업자에서 호텔업자 외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이용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180일 이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 및 음식제공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행위를 함에 있어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개 공지 확보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